

마포구 방법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6. 10. 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10월 2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전산정보과장 이명성

가. 제안이유

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방법용 CCTV 관제 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민간위탁의 목적

- (1) 현재 운영 중인 근무 체계로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주말, 휴일 관제의 공백 시간이 발생함에 따라 365일 24시간 관제 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함
- (2) 지하1층에 별도 위치한 관제실 근무로 근로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의 한계가 있으며, 근무인원의 결원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어려움
- (3) 따라서, 방법용 CCTV 관제사무 수행실적이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 기

관에 위탁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, 탄력적 인력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관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○ 민간위탁의 내용

(1) 위탁 기간 : 2017. 1월 ~ 12월

(2) 위탁업체 선정 방법 : 제한경쟁입찰

(3) 민간위탁 범위 : CCTV 관제인력 운영 전반

- 근무 장소 : 마포구청 지하1층 통합관제실

- 근무 인원 : 6명 (3조 2교대)

- 근무 내용

· 통합관제실 내 CCTV 모니터 상시관제

· 범죄 등 각종 긴급사항 발생 시 경찰관에게 신속보고 등

○ 소요예산 : 224,576천원(구비)

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○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따라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민간 위탁 사무에 속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동(同) 조례제4조제3항에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, 위탁기간,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탁기간 선정전에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라는 규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방범용 CCTV 관제 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

○ 또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구청사 지하 1층 통합관제실 근무현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5명과 경찰관등 11명이 주택가,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574개소에 대한 방범용 CCTV 관제업무를 하고 있으며, 평일에는 오전6시~오전9시까지 / 오후6시~오후8시까지,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기간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 구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바,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

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행 기간제 근무방식을 1년 365일 24시간 방법용 CCTV 관제업무를 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관제업무실적이 있는 전문 우수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

- 현행 기간제 근무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을 비교해 보면 현행 기간제 근무방식은 근무인원은 5명이고, 근무시간은 주간은 평일 오전9시~오후 6시까지, 야간은 평일 및 토요일 오후 8시~다음 날 6시까지 하고, 방법용 CCTV 관제비용은 1억 1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, 특히 범죄 발생률이 높은 주말, 공휴일 관제 업무의 공백으로 범죄발생 시 즉각적인 대책이 어렵고, 또한 기간제 근무자의 근무인원 결원 시 인력 총원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, 변경하려는 민간위탁 근무방식은 근무인원은 6명으로 365일 24시간 관제업무할 수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어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민간위탁 운영 비용이 2억 2,457만 6천원으로 비용면에서 기간제 근무방식보다 예산이 1억 1천 400여 만원이 더 소요되지만 민간위탁 근무방식이 365일 24시간 방법용 CCTV 관제업무를 할 수 있어 현행 기간제 근무방식보다 안전하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방법용 CCTV 관제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